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An Examination of the Problems and Proposed Solutions of the Large Business Group Designation System -

김지홍·윤동영*

초 록

우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경제력집중의 방지를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 ‘기업집단’의 범위 확정과 관련하여 현재 규제당국의 실무가 최초 입법 이후의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령과 입법취지에 맞게 기업집단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조정이다. 공정거래법은 친족, 계열회사 임원, 비영리법인 임원을 동일인의 영향 하에 있는 ‘동일인관련자’로 정하고 있으나, 동일인관련자는 동일인과 엄연히 별개 법적 주체이며 반드시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 자라거나,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최근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근본적으로 동일인관련자의 지배를 동일인의 지배로 간주하는 제도의 약점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기업집단의 요건으로서 ‘지배력’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다. 규제 실무는 동일인관련자가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동일인이 직접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배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간주하고 동일인의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를 인정한다. 그러나 법령 문언 및 구조상 동일인이 그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회사를 ‘동일인관련자’가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계열회사로 간주할 근거가 없다.

셋째, 기업집단의 요건으로서 ‘지분율’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한다. 즉, 회사 지분의 보유를 사업내용 지배의 징표로 설정한 것인데, 실무상 동일인이 지분을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동일인관련자’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본 글은 저자들 개인의 견해로 법무법인 지평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최대출자자의 경우 계열회사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문언 및 구조상 동일인인 주도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라고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 4746 판결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동일인관련자’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계열 회사 편입업무를 처리해 오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동일인의 지배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행정이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령에도 부합하고, 불필요한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I.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의 개요

1.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제도 개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또는 ‘법’)은 제1조(목적)에서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방지”를 명시하고 있다. 경제력집중 방지 규율은 기업집단을 기본단위로 하여 이루어진다. 기업집단은 1986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 당시 최초 도입된 개념으로, 당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정의한 뒤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¹⁾ 이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의 구체적 내용은 변해 왔으나,²⁾ 기업집단을 경제력집중 규제의 기본단위로 한다는 규제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규제는 다음 <표 1>과 같다.

1) 권오승·서정, 「독점규제법」, 법문사, 제6판, 2023년, 37~38쪽.

2)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은 1987년 이래 자산규모 → 순위 → 자산규모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상위 기업집단들은 자산규모가 100조원을 훨씬 넘는 등 기업집단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여 일정한 기준을 넘는 기업집단들을 모두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었고, 2017년 3월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은 규제대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나누어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권오승·서정, 앞의 책, 537~539쪽).

〈표 1〉 대규모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경제력집중 규제 개관

규제 내용	규제대상 기업집단
① 상호출자의 금지(법 제21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② 순환출자의 금지(법 제22조)	
③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법 제23조)	
④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법 제24조)	
⑤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법 제25조)	
⑥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26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법 제27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법 제28조),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29조)	공시대상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포함)
⑦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법 제30조)	
⑧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법 제47조)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개념을 도입하면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의 근거규정도 도입하였다. 경제력집중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은 1차 개정시부터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제8조의3 제4항), 현재에도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을 뿐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는 점은 동일하다(제32조 제4항). 즉, 경제력집중 규제의 기본 단위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련자인 사인(私人)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보하는 구조이다. 이 때 사인이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25조 제2호).

이상 설명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공정거래법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제도를 마련하여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력집중 억제’에 있고, 이를 위하여 각종 규제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ii) 다만, 그 규제를 어디까지 적용할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기업집단’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뒤 기업집단 중 일정한 규모 이상을 가지는 경우를 ‘대규모기업집단’으로 규정하여 규제의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iii) 이를 위해 공정위는 회사 또는 특수관

제인에게 ‘지정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2. 기업집단의 기본 개념

공정거래법 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동일인인 …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1호). 즉, 기업집단의 범위는 1) ‘동일인’과 2) ‘사실상 사업내용의 지배’에 따라 결정된다.

(1) 동일인

기업집단의 범위가 정해지려면 먼저 동일인이 확정되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의 의미에 대하여 명시적인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2조 제11호를 통해 “2개 이상의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라고 추론할 수 있다.³⁾ 동일인은 회사일 수도(제2조 제11호 가목), 자연인, 비영리법인 등 회사가 아닐 수도 있으나(제2조 제11호 나목), 자연인의 경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고 평가되는 개인(이른바 ‘총수’)이 동일인에 해당한다.⁴⁾⁵⁾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동일인 확정에 관한 근거 규정,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절차나 기준을 정한 고시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과정에서 공정위가 동일인을 함께 확정하고 있을 뿐이다.⁶⁾ 실무적으로는 공정위에서 ‘각 기업집단 동일인 앞’으로 지정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고,⁷⁾ 각 기업

3) 권오승·서정, 앞의 책, 540쪽.

4) 공정위의 보도자료도 ‘총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공정위 2021. 11. 16.자 보도자료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5)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현행 제도가 사실상 전근대적 1인 지배체제를 암묵적으로 정당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업집단 범위 확정을 위한 기준점은 자연인이 아니라 ‘핵심기업’이라는 법인 중심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김우진·이은정·최난설현, “동일인 지정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Centrality 적용 실증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 법경제학연구 제17권 제3호, 2020년, 579~581쪽).

6) 이봉의, 『공정거래법』, 박영사, 2022년, 524쪽.

7) 황태희, “대규모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경제법연구 제20권 제3호, 2021년, 50쪽.

집단 스스로 내부 합의를 통해 동일인을 정하고 공정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동일인 확정이 이뤄져 왔다.⁸⁾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들(① 친족, ② 비영리법인·단체, ③ 계열회사, ④ 사용인)을 “동일인관련자”로 정하고, 동일인의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 여부 판단에 동일인관련자의 보조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동일인관련자는 아래와 같다(제4조 제1항 제1호).

가. 동일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친족”이라 한다)

- 1) 배우자
- 2) 4촌 이내의 혈족
- 3) 3촌 이내의 인척
- 4)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 5)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이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따른 피고용인을 말한다)

(2) 사실상 사업내용의 지배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의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8) 공정위는 2021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과정에서 ‘최초로’ 지정자료 제출에 앞서 ‘동일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22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부터는 다시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동일인 확인 절차가 명문의 규정 없이 실무적으로만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현재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동일인 확인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시행령은 이른바 ① 지분율 요건(제4조 제1항 제1호)과 ② 지배력 요건(제4조 제1항 제2호)으로 이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1) 지분율 요건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지분 보유’를 사업내용 지배의 징표로 설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실무적으로 지분율 요건이 정량적, 객관적 기준이라고 보아, 실제 의결권 행사 여부 등과는 상관없이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공정위 실무상 동일인이 지분을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동일인관련자’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최다출자자라면 지분율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동일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동일인이 실제로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지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일인이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회사들(예컨대 계열 회사 임원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⁹⁾ 동일인의 처남의 배우자가 최다출자자인 회사¹⁰⁾)에 대하여도 지분율 요건 충족을 이유로 동일인의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 하에 있다고 판단해 오고 있다. 동일인관련자는 동일인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전제하고, 동일인관련자의 지배를 동일인의 지배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2) 지배력 요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는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라는 방법으로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기준은 각 목에서 정하고 있다.

9) 「김범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의 동일인)의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2018. 1. 12.자 의결 제2018-019호)

10) 「조양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2018. 8. 16.자 결정 제2018-056호)

-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명한 회사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해당 회사 간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해당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해당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 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해당 회사 간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 또는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
- 마. 그 밖에 해당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시행령의 문언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지배력 요건이 충족되어 동일인의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i)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일 것, (ii)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동일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일 것이라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지 (i)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동일인의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가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ii) 동일인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¹¹⁾

실무적으로, 공정위는 지배력 요건을 판단할 때에도 지분율 요건과 마찬가지로 동일인관련자와 동일인을 동일시하고 있다. 동일인관련자가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라면 동일인이 직접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배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동일인의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11) 권오승·서정, 앞의 책, 544쪽.

Ⅱ.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판단기준의 재정립

1. 기업집단 범위의 문제점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범위는 1987년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출범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 이후의 사회여건과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기업집단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¹²⁾ 소수 대규모 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폐해가 나타나고 재벌 총수 1인이 기업집단을 제왕적으로 지배하던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집단 총수의 의미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집단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¹³⁾

(1) 친족 범위의 문제

먼저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가 현재 사회생활상과 맞지 않게 과도하게 넓다는 지적이 있다. 1987년 입법 당시만 하더라도 대가족이 흔하였으나 이후 급속히 진행된 핵가족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⁴⁾ 전통적인 대기업집단의 경우 대가족의 문화와 정서가 잔존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가족구조의 변화에서 예외가 되기는 어렵다.

동일인관련자 제도는 각 동일인관련자가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분여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¹⁵⁾ 그러나 설문 조사에 따르면 3촌 이내까지만 실질적인 “친족”으로 생각한다는 국민이 34.3%로 가장 많으며, 직계가족만 생각한다는 비율도 11.6%에 이른다. 또한 54.8%의 국민들은 직계가족과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¹⁶⁾ 즉, 현재 ‘동일인과 경제적이해관계를 동일인’ 것을 당연한 전제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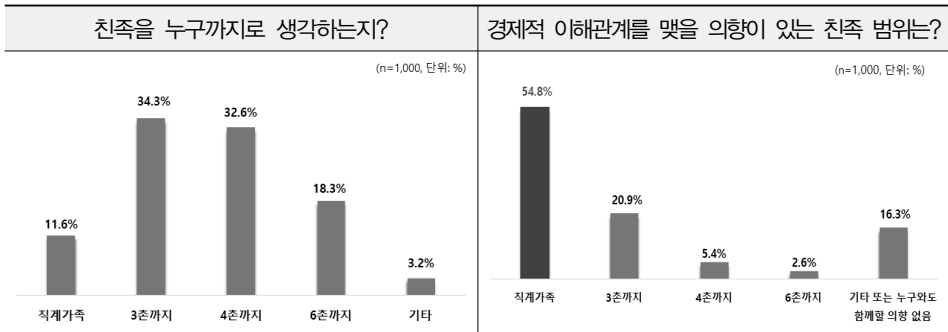
12) 지인엽,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법경제학적 소고”, CFE Report, 2022년, 19쪽.

13) 최은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599호, 2019년, 4쪽.

14) 김봉철,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제연구 제38호, 2010년, 255쪽.

15) 김봉철, “경제 기업법령상 친족인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외법논집 제33권 제4호2009년, 30~31쪽.

되어 있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와는 상당한 괴리가 발견된다.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하는 친족 범위는 해외 규제 사례와 비교해보아도 넓은 편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가족 중심으로 구성하며, 대체적으로 3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관계가 밀접한 가족구성원’이라는 기준을 통해 경제적인 생활공동관계가 형성되는 관계로 특수관계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¹⁷⁾ 이와 달리 친족 범위를 넓게 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는 각 기업집단들이 지정자료 제출 시 동일인도 모르는 친족들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어려움을 발생시키기도 한다.¹⁸⁾ 이는 단순히 실무적으로 정보 수집이 어려운 것을 넘어서, 동일인이 평소 교류가 없는 친족들의 정보까지 정확히 수집하여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¹⁹⁾

(2) 사외이사, 감사, 비영리법인·단체 임원의 문제

사외이사, 감사, 비영리법인·단체의 임원 모두를 동일인관련자로 일괄 포함시키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다.²⁰⁾ 사외이사, 감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전

16) 전국경제인연합회 2021. 9. 15.자 보도자료 “친족범위에 대한 대국민인식조사결과”

17) 허원,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KERI Insight 19-15, 2019년, 22~25쪽.

18) 조선일보 2021. 10. 25.자 기사 “기업들 “총수 6촌의 자료까지 내라니...” 해마다 특수관계인 보고 하느라 진땀”

19) 예컨대 공정위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가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혈족 3~4촌이 보유한 회사를 소속회사 명단에서 누락하고, 혈족 5~6촌 및 인척 4촌 일부를 친족 현황에서 누락해 제출한 행위를 문제삼아 동일인을 고발한 바 있다(공정위 2021. 6. 8.자 결정 제2021-024호).

20) 중앙일보 2022. 6. 20.자 기사 “사외이사의 개인회사가 그룹 계열사? ... 30년도 남은 남은 규제”

제로 지배주주, 경영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동일인을 감시하는 역할로서 일률적으로 동일인이 지배하는 자로 보거나,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사외이사는 시작부터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개선 방안의 하나로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고,²¹⁾ 현재 상법은 사외이사와 감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제한을 마련해두고 있다.²²⁾ 공익법인 임원의 경우도 동일인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들이 다수 존재한다.²³⁾

(3)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 사이 관계 문제

친족, 계열회사 임원, 비영리법인·단체 임원 등 동일인관련자는 동일인과 엄연히 별개 법적 주체이다. 반드시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 자라거나,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단정지을 근거가 부족하다. 기업집단 가족 구성원 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등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²⁴⁾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다른 기업집단의 비영리법인·단체 임원을 맡기도 하는 등,²⁵⁾ 동일인관련자가 동일인의 지배를 받지 않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기업집단의 범위는 ‘동일인의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를 기준으로 한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11호). 동일인의 지배를 받지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항상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는 ‘동일인관련자의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로는 ‘동일인의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동일인관련자의 지분 보유(지분율

21) 김환일·박용근·김동근,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법학 제25권 제4호, 2018년, 276쪽.

22)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이 제한되며(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상장회사의 상근감사로도 선임되지 못한다(제542조의10 제2항). 사외이사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로만 선임할 수 있으며(제542조의8 제4항, 제5항),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들에게 통지, 공고된다(제542조의3 제8항). 감사 선임 시 각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로 제한되며(제409조 제2항),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등 사용인을 겸직하지 못한다(제411조).

23)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공익법인 임원이 되지 못하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임원 취임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조 제2항). 공익법인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주무관청에서 추천할 수 있다(제5조 제8항).

24) 강상엽, “동일인 지정제도: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의 비판적 검토”, 경제법연구 제20권 제2호, 2021년, 208~209쪽.

25) 연합뉴스 2019. 1. 27.자 기사 “대웅제약 윤재승 전 회장, 네이버 커넥트재단 이사장 사퇴”

요건의 경우), 동일인관련자의 지배적 영향력 행사(지배력 요건의 경우)만 근거로 곧바로 계열회사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공정위 실무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못하는 회사까지 부당하게 확장할 우려가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가 넓게 정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2.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관련자 조정과 그 한계

1987년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도입 이후 동일인관련자 범위는 크게 두 차례 조정되었다. 먼저 2009년 개정에서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되었다. 당시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일부개정된 것)은 개정이유를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친족 범위를 축소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두 번째로 최근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면서(2022. 12. 27.자 대통령령 제33140호로 일부개정된 것), 동일인관련자 범위가 다시 한번 조정되었다.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는 혈족의 범위가 4촌 이내로 줄어들고, 인척의 범위는 3촌 이내로 줄어들었으며, 5촌·6촌 혈족이나 4촌 인척은 예외적으로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된다. 대신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가 새로이 동일인관련자에 추가되었다.

또한 현행 시행령은 사외이사가 독립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의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를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제4조 제2항). 사외이사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개정사항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시행령은 개정이유에서 동일인관련자 조정의 이유를 “친족 범위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추어 조정”하고,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기업집단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²⁶⁾ 동일인관련자 범위

26) 공정위 2022. 12. 20.자 보도자료 “동일인의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가 너무 넓고, 기업집단 범위가 ‘동일인의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와 동떨어지게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일응 제도 개선의 방향은 타당해 보인다.

다만 이를 통해 기업집단 범위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먼저, 친족 범위가 여전히 넓다. 대다수 국민이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친족 범위는 직계가족인데 비해,²⁷⁾ 4촌 혈족, 3촌 인척 등이 모두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된다. 5·6촌 혈족과 4촌 인척도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분 1% 이상을 보유하면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해,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동일인의 5·6촌 혈족과 4촌 인척까지 조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업집단의 부담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²⁸⁾

둘째, 일부 사외이사 지배 기업만이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되었을 뿐, 사외이사, 감사, 공익법인 임원들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지 못하였다.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의 임원독립경영 요건은 임원이 동일인관련자로 포함되기 전부터 지배하던 회사여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는 ‘동일인관련자의 지배를 동일인의 지배와 동일시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상술한다.

3. ‘지배력 요건’ 판단 기준의 재정립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배력 요건은 구조상 어떤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i) 시행령 제4조 제2호 각목 중 하나에 해당할 것, (ii)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될 것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동일인의 해당 회사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시행령 제4조 제2호 각목의 요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곧바로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동일인관련자의 지배적 영향력이 인정된다면 곧바로 지배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공정위의 현행 실무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동일인관련자”와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거래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A 회사가 계열회사에

27) 전국경제인연합회, 위 보도자료.

28) 전국경제인연합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선 건의서”, 7쪽.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A 회사에 대한 당해 기업집단 동일인의 지배적 영향력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문언상 동일인의 지배력 행사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타당함은 분명하다. 각 목 외 부분에서 “다음 각 목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정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단어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즉 ‘A로서 B인 것’이라는 의미는 ‘A지위(자격)을 가진 것들 중 B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A와 B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A와 B중에는 B가 핵심적인 요건에 해당한다.²⁹⁾

이때 시행령 제4조 제2호 각 목이 대등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예컨대 가목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명한 회사” 또는 나목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라면 별도의 검토가 없더라도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쉽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반면, 다목 또는 라목은 동일인의 지배적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목, 라목을 충족했다는 것만으로 동일인의 지배적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는 없고,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같은 조항에 열거된 항목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목의 ‘인사교류’나 라목의 ‘거래’도 가목의 임원임면이나 나목의 영향력 행사에 준하는 경우로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지배력 요건 해석의 문제는 동일인관련자의 해당 회사에 대한 지배력(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거래나 채무보증 등)이 인정되는 사정은 있으나 동일인의 지배력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계열회사 판단에 대한 결론을 달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롯데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³⁰⁾

29) 공정거래법 시행령 지분율 요건에서도 “동일인이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인 경우를 계열회사로 보는데, 이 때 “로서”의 해석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만 소유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최다출자자라는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30) 서울고등법원 2016. 8. 21. 선고 2016누60173 판결(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7766 판결로 확정).

이 사건에서는 롯데 그룹의 계열회사 판단이 문제되었다. 공정위는 ① 롯데그룹 동일인관련자(당시 롯데그룹 동일인 신격호의 친딸)가 A 회사 대표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② 주기적으로 A 회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③ A 회사 이사로도 취임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지배력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A 회사가 롯데그룹 계열회사에 해당한다며 계열편입의제 처분을 하였다. 이 계열편입의제 처분에 대하여 롯데그룹 대표회사인 롯데쇼핑과 A 회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배력 요건의 해석이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① 롯데그룹 동일인이 A 회사의 경영에 직접·계속적으로 관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② 롯데그룹 동일인이 A 회사의 신임 대표이사에게 회사 경영에 관한 지시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A 회사 신임 대표이사가 동일인관련자에게 업무보고를 한 것만으로 동일인이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A 회사가 롯데그룹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법원은 동일인관련자가 해당 회사에 지배력을 미칠 수 있다 하더라도, 동일인의 당해 회사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계열회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인이 해당 회사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야 동일인의 회사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금호아시아나 사건이 해석의 단초를 제공한다.³¹⁾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소속 계열회사인 금호산업, 금호타이어에 대하여 2010. 1. 6.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었고, 박삼구 회장(이하 '박삼구') 등 기존 주주에 대한 대규모 감자와 채권자의 출자전환 등으로 주주변동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2011. 4. 1. 기준 금호산업에 대한 박삼구 및 박삼구 관련자의 지분은 3.08%, 채권금융기관의 지분은 88.89%이고, 금호타이어에 대한 박삼구 및 박삼구 관련자의 지분은 9.74%, 채권금융기관의 지분은 68.97%가 되었다. 그런데 2012. 4. 12. 공정위는 금호석유화학 및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 25개 회사를 박삼구를 동일인으로 하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로 지정하였고, 금호석유화학은 공정위의 지정 처분에 불복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1) 서울고등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누12565 판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7268 판결로 확정).

지정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안에서 법원은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에도 불구하고 박삼구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인정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박삼구가 채권금융기관의 협조 또는 동의 하에 양사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박삼구는 금호산업의 명예회장, 금호타이어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위 각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업무집행에 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 또는 자금관리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감시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박삼구의 지배적 영향력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점” 등의 사정을 들어 박삼구가 사실상 금호산업·금호타이어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따라서 금호산업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아시아나항공 및 그 자회사 등에 대하여도 박삼구의 사실상 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대표이사의 임면 여부 및 임면 권한, 회사에서의 지위,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결정권 등이 일응 지배적 영향력의 인정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지분을 요건’ 판단 기준의 재정립

지분을 요건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30% 이상을 보유한 회사에, 동일인은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동일인관련자만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공정위 실무는 이런 경우까지 지분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동일인이 지정자료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하여 ‘지정자료 허위제출’이 문제된 사안 중에는 동일인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의 이사, 비영리법인 이사 등)만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³²⁾ 그러나 이러한 공정위의 해석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법률해석의 원칙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에 있고, 이에 더하여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

32) 공정위 2021. 9. 11.자 의결 제2021-041호(계열회사의 기타 비상무이사가 보유한 회사 누락), 공정위 2020. 2. 13.자 의결 제2020-040호(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회사 누락), 공정위 2018. 1. 12.자 의결 제2018-019호(계열회사 임원이 보유한 회사 누락) 등.

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로 동원할 수 있다.³³⁾ 이러한 법률 해석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정위의 해석과 달리, 동일인이 한 주도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지분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1) 문언 해석의 문제

지분을 요건의 문언상 주식 보유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동일인’이다. 지분을 요건을 분설하면 ①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② 동일인이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지분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어, 문언상 동일인관련자는 주식소유의 주체가 아니다. 즉 동일인관련자의 보유 주식은 동일인이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지분율을 계산하는 데 합산될 뿐 동일인관련자가 별도의 주식보유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2)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관한 대법원 판결 등

동일 또는 유사한 문언에 대한 법원의 판례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대표적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 있는 자’의 해석이 문제된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4746 판결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사건은 A 회사의 대주주인 甲이, 자신의 자녀들인 乙과 丙이 합계 99%의 지분을 소유한 B회사에 자신이 소유한 A 회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사안이다. 과세관청은 甲의 이러한 저가양도행위에 대하여 甲과 B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는데, 법원은 B회사는 甲의 자녀들이 99%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 甲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아니므로, 甲과 B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 중 하나로 “이 사건 조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계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을 개정된 것인데, 그 개정 전후의 규정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

3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은 개정 전의 조항을 단순히 문구정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개정 전의 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님]”을 들었다. 그런데 아래 <표 2>에서 보듯이 대법원이 해석에 참고한 개정 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의 문언 구조는 “A 단독으로 또는 B와 공동으로”라고 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지분을 요건과 거의 동일하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의 취지상 지분을 요건도 동일인이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동일인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표 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전후 비교

개정 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	대법원 2009두4746 판결의 해석대상
제111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4. 생략) 5.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계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3. 생략)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참고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조항은 1974. 12. 31. 전부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최초로 규정된 조항이다. 그런데 이 조항은 다음 <표 3>에서 보듯이 유사한 시기에 개정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조항(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³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조항(상증세법 제41조 제2항³⁵⁾)과 비교해보면 문언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 소득세법의 경우 “A 단독으로 또는 B와 공동으로”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유사한 시기 개정된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에서는 “A 또는 B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정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문언상 반드시 A의 출자를 요구하지 않고, A 또는 B중 누구라도 출자하고 있으면 족함이 분명하다. 이처럼 유사한 시기에 도입된 조항임에도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이 다른 세법 규정과 다른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세법 규정과 특수관계인 요건을 달리 규정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34) 1974. 12. 31. 대통령령 제7464호로 일부개정된 것.

35)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일부개정된 것.

〈표 3〉 상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② 법 제34조의2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 생략) 4. 양도자 또는 전 각호에 계기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① 법 제20조에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자를 말한다. (1. ~2. 생략) 3. 출자자 또는 전 각호에 계기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 전 각호에 계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그 밖에 법원이나 유관기관에서는 지분율 요건과 유사한 문언을 다음 <표 4>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모두 “동일인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표 4〉 유사한 문언에 대한 법원/유관기관 해석례

구분	쟁점 법령	해석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 1617 판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 “주주 등 1인[양도자등]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양도자 등은 전혀 출자하지 않고 특수관계자만 출자한 회사”는 포함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2. 17. 선고 2020구합53309 판결 ³⁶⁾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자목 전단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시행령 제3조 제1항 자목 전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출자지분이 존재해야 함
조세심판원 2020. 7. 21.자 2020중 0733 결정	구 공정거래법 제3조 제1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 현행 지분율 요건)	동일인이 해당 회사 지분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음
조세심판원 2017. 6. 30.자 2016전 3135 결정		

36) 서울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1누37634 판결로 항소기각, 항소부제기로 2021. 10. 15. 확정.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조세법규를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며³⁷⁾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해석할 때 적용되는 엄격해석의 원칙 면에서는 공정거래법도 이러한 해석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범위에 관한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해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³⁸⁾ 더욱 문언해석의 엄격성이 요구된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³⁹⁾ 죄형법정주의의 확장해석 금지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된다.⁴⁰⁾

계열회사 범위에 관한 시행령 조항은 그 자체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 전술한 것처럼 공정거래법은 피고가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하고(제31조 제4항), 자료누락이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제125조 제2호). 공정위가 어떤 회사를 계열회사로 판단하고 있는데, 당해 회사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동일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즉, 어떤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계열회사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은 곧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의 구성요건을 넓게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열회사의 범위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서도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

(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개정 과정의 고려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지분율 요건이 도입되어 개정되어 온 과정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

37) 이동식·안경봉, 한국에 있어서 조세법의 해석·적용, 조세학술논집 통권 40호, 2014년, 123쪽.

38) 김시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세법의 해석방법론 - '의심스러운 경우 납세자의 이익으로'의 해석 방법론을 중심으로, 사법 통권 59호, 2022년, 507쪽.

39)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도16578 판결 등.

40)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념은 1986년 1차 개정에 도입된 개념이고, 제정 공정거래법의 경우 기업집단에 관한 정의 규정은 두지 않았다. 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단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계열회사’라는 개념을 두고 있었다. 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계열회사의 규정과 제1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기업집단 규정을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 1987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비교

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1981. 4. 1. 제정)	1987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1987. 4. 1. 개정)
<p>제13조 (계열회사의 범위)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는 회사”라 함은 제12조제1항의 회사(이하 “당해 회사”라 한다) 또는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가 <u>각각 또는 합하여</u>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회사 또는 그 출자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는 그 관계되는 당해회사 또는 출자자와 동일인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친족관계에 있는 자</u> 2. 당해회사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에 한하고,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설립자에 한한다) 3. 출자자 또는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u>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u>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4. 당해 회사나 출자자가 <u>각각 또는 합하여</u>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회사 	<p>제2조의2 (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에서 “동일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동일인이 <u>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u>,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한한다.)이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거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법 제7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회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u> 다만, 주식 또는 재산의 소유관계등에 비추어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일인 및 동일인과 제1호에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의 과반수이거나 <u>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였거나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u>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 3. 동일인 및 제1호·제2호에 규정한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u>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u>

4. 동일인 및 제2호·제3호에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의 경우 임원, 개인인 경우 상업 사용인·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A와 B가 지분을 함께 보유한 경우’를 규정하는 문언이 명백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A 또는 B가 “각각 또는 합하여”라고 규정하여 A 또는 B 중 하나만 지분을 보유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현행 규정과 같게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만약 1987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 중 누구라도 지분을 보유한 경우를 기업집단에 포함할 의사였다면, “각각 또는 합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함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였을 것이다.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명백하게 다른 문언을 사용한 것은 양자를 달리 보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차이는 제정 공정거래법과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관련 규정의 도입 취지 자체가 달랐다는 점에 기인한다. 제정 공정거래법의 관련 조항은 기업집단 규제가 도입되기 전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항이었으므로, ‘기업결합 행위’라는 구체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계열회사 여부가 문제되지 않았다. 즉 제정 공정거래법 구조 하에서는 계열회사 범위를 다소 넓게 보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반면 1987년 과도한 경제력 집중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집단 규제’라는 일률적·사전적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전적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을 적절히 정할 필요가 있었다. 1987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업집단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입법자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1987년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추단되는 입법자의 의도는, 새롭게 도입되는 경제력집중 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인 ‘기업집단’의 범위를 명확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획정하는 데 있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조항 변경에서도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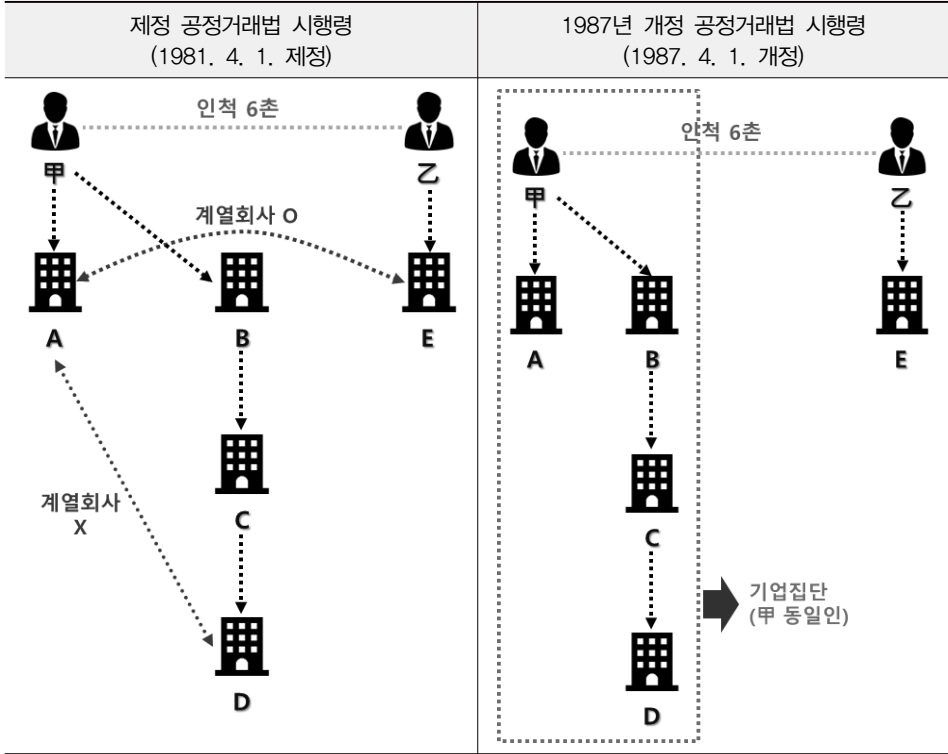
① 1987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친족의 범위를 축소했다. 기존에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계열회사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친족관계에 있는 자”라

고 규정한 반면(제13조 제2항 제1호),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한 것이다(제2조의2 제1호). 친족들이 기업집단 지배에 관여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친족을 동일인관련자 중 하나로 두되,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한 것이다.

② 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비영리법인 등에 관해 (i) 출자자 또는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ii)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본 반면(and 요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i) 동일인 및 동일인과 제1호에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였거나, (ii)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경우(or 요건) 동일인관련자로 포함했다. 이렇게 요건을 정비함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포함될 수 있는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여기서도 1987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기존 조항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기업집단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규정을 새롭게 정비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출자회사가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한 회사가 다시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연쇄적 출자)에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의하면 “당해 회사(A)나 출자자(甲)가 각각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회사(B)”까지만 당해회사 또는 출자자와 ‘동일인’에 해당하므로(제13조 제2항 제4호), B회사가 30% 이상을 보유한 회사(C)가 있다면 이는 A회사와 계열회사에 해당하나(B회사는 甲의 동일인이므로), 그 회사(C)가 다시 보유한 회사(D)에 대해서는 A회사의 계열회사로 볼 근거 규정이 없다. 즉,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지분출자 흐름이 일정 단계에서 끊어지게 된다. 반면 1987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의하면 계열회사는 모두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하므로(제2조의2 제3호), 연쇄적인 출자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들이 모두 기업집단에 포함된다.

위 ①과 ③의 설명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인척 6촌 乙이 보유한 회사 E가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연쇄적으로 출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출자고리의 마지막에 있는 D회사가 A회사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87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기업집단의 범위에 관한 시행령 조항은 큰 틀에서 동일성을 유지하였지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반영해 조금씩 개정이 되어 왔다. 특기할 부분은 <표 6>에서 보듯이 지분을 산정 시 지분 보유자가 의결권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를 조금씩 더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기업집단 관련 규정이 최초 도입된 1987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발행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만 보유하면 족할 뿐 그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그러다가 1990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최초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에 출자·보유한 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계열회사 판단 시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후 1993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다시 “합의·계약 등에 의하여 주주권의 행사가 제한된 경우”도 제외 사유로 추가하였으며, 1997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표 6〉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흐름

1990. 4. 14.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1993. 2. 20.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1997. 3. 31.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p>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기준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지분을 포함하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출자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한한다)</p>	<p>3조 (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기준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지분을 포함하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출자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한하며, <u>최대출자가 합의·계약등에 의하여 소유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임원의 임면등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u>)</p>	<p>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지분을 포함하며, 상법 제370조(의결권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회사</p>

현재와 동일하게 “상법 제370조에 의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과정을 보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이를 계열회사로 정한 근거가 ‘의결권’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지분 보유를 통한 의결권 행사 가능성이 해당 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의 핵심 표지이자 근거라는 점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를 반대 해석하면 동일인이 애초에 의결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즉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Ⅲ. 마치며: 계열회사 규제 실무 변화의 필요성

이와 같이 동일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회사를 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제외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 변화가 수반된다. 계열회사의 숫자가 지나치게 줄어들어서 기업집단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계열회사는 주식 보유 여부만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으며,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다른 징표를 통해 얼마든지 계열회사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대표이사를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임원의 절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지,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 간에 인사교류가 있는지,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해당 회사 간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 또는 채무보증에 있는지, 해당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상호명을 사용하거나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재 기업집단 계열회사로 분류되어 있는 소속회사의 숫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거나, 기업집단 규제가 필요한 회사가 누락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기업집단 규제가 불필요한 회사’가 과도하게 편입되어 있는 불합리한 현실이 개선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동일인과 사실상 교류가 없는 동일인관련자가 기업집단과 무관하게 다수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 사외이사가 기업집단과 무관하게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규제당국으로서는 ‘동일인관련자’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편입업무를 처리해 오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동일인의 지배력을 검증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행정이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령에도 부합하고, 불필요한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동일인이 적어도 1주도 보유하지 않아서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지분율을 근거로 ‘사업내용 지배’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해석이 문언의 구조나 제·개정 과정에서 확인되는 입법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계열회사)에 관한 정보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동일인 입장에서 통상적인 경우 지분율 요건에 의하든 지배력 요건에 의하든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 회사를 의도적으로 지정자료에서 누락할 이유가 없다. 반대로 동일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한다면 결국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제45조 제1항 제9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제47조) 등을 숨기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바,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공정위가 정당한 조사권을 발동하여 법 위반행위를 밝혀내고 처벌하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오승·서정, 「독점규제법」, 법문사, 제6판, 2023년.
- 이봉의, 「공정거래법」, 박영사, 2022년. 김우진·이은정·최난설현, “동일인 지정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Centrality 적용 실증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 법경제학연구 제17권 제3호, 2020년.
- 황태희, “대규모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경제법연구 제20권 제3호, 2021년.
- 지인엽,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법경제학적 소고”, CFE Report, 2022년, 19쪽.
- 최은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599호, 2019년.
- 김봉철,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제연구 제38호, 2010년.
- 김봉철, “경제 기업법령상 친족인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외법논집 제33권 제4호, 2009년.
- 허원,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KERI Insight 19-15, 2019년.
- 김환일·박용근·김동근,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법학 제25권 제4호, 2018년.
- 강상엽, “동일인 지정제도: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의 비판적 검토”, 경제법연구 제20권 제2호, 2021년.
- 이동식·안경봉, 한국에 있어서 조세법의 해석·적용, 조세학술논집 통권 40호, 2014년.
- 김시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세법의 해석방법론 - ‘의심스러운 경우 납세자의 이익으로’의 해석방법론을 중심으로, 사법 통권 59호, 2022년.

Abstract

The Korean Act 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air Trade Act”) designates a large group of companies and imposes various regulations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Regarding the determination of the scope of this 'business group', there are criticisms that the current practice of regulatory authorities does not reflect social changes since the original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in the direction of rationally adjusting the scope of business group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legislative intent.

First, the scope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should be adjusted. The Fair Trade Act defines relatives, executives of affiliated companies, and executives of non-profit corporations as ‘related persons’ of “the same person(dong-il in)”under the influence of the same person, but related persons are strictly separate legal entities from the same person, and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y are necessarily controlled by the same person or share economic interests with the same person(The “same person” refers to a person who has substantial control over a group of businesses/conglomerate). Although the Enforcement Decree has recently been revised,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weakness of the system, which basically considers control by a related person as control by the same person, has been improved.

Second, it is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control” as a requirement for a business group. Regulatory practice has been that a company whose management is dominated by a related person is deemed to meet the control requirement regardless of whether the same person directly exercises a dominant influence on the management, and the de facto control of the business content by the same person is recognized. However, there is no basis in the text and structure of the statute to consider a company that is not controlled by the same person as an affiliated company because it is controlled by a “related person.

Third, there is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ownership interest” as a requirement for a corporate group. A company that is a majority shareholder, meaning that the same person,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a related person, owns more than one-hundredth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of the company, is a company that is effectively controlled by the same person. In other words, the holding of shares in a company is set as a sign of control of

business contents, and in practice, even if the same person does not hold a single share, the largest shareholder who holds more than 30% of the shares is regulated as an affiliated company. However, due to the text and structure of the law, it is not appropriate to consider a company that is not owned by the same person as a ‘company controlled by the same person’. In other words, the scope of related parties under the Income Tax Act needs to be changed to verify the control of the same person, rather than using the shareholding percentage of the ‘same person’ as the basis for processing affiliate consolidation. This would be in line with the law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affiliates of a business group and would prevent unnecessary infringement of rights.

■ 주제어: 대규모기업집단, 기업집단지정, 경제력집중, 동일인, 동일인관련자, 친족, 임원, 지배력, 지분율

■ key words: large business group, designation of business group,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he same person, dong-il in, specially related persons, relatives, executives, control, ownership interest

논문투고일자: 2023.10.00.

심사의뢰일자: 2023.10.00.

게재확정일자: 2023.10.00.